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시행 0000. 00. 00.] [규정 제000호, 0000. 00. 0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인천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항선”이라 함은 국내항만과 외국항만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2.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3.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운법」 특례 등에 따른 컨테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공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항만공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공사 사장이 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사용승낙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4조 별표1 제1호 ‘나’목 (1)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항선·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⑤ 별표1제1호 다목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⑥ 사장은 별표1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 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당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8)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의 경우 항만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의 조건(요율을 포함한다) 및 사용료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과 임대부두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 사장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신고) 「항만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요율·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 항만시설과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 승낙을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3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외의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 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이용시설(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
- 6. 개별법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 8. 경인항의 관리·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③ 영 제1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 사업자
-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 3.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장으로부터 여객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동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 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 6. 삭제 <2016.01.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청서 또는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가산금, 변상금, 여객터미널이용료를 제외한 부과금액이 3,000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단,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감면의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세부운영 방안을 따른다.

제6조(사용료의 고지) 사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을 승낙하거나 항만시설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승낙을 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입고

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사장은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 포함)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사장은 은행지로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① 사장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항만시설사용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당해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 고지일 부터 15일 이내
-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 납부하는 경우 : 해당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로부터 30일 이내
- 4. 사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박입출항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사장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용료는 매년마다 부과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이 항만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가귀속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지방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총사업비 확정통보서 사본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도 정산통지서 사본을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장은 법 부칙 제6조, 항만법 제1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한 결과를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 1. 당해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 2. 항만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사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사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감면 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당해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무단사용료의 징수)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승낙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단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연체료 등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5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승낙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 반환 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승낙을 받은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8조(보험에의 가입) ① 사장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미리 당해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사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사용승낙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관계직원의 조사)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의 정지 등) 사장은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의 취소 또는 사용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적용 예) 항만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료는 입항시점을, 화물입출항료중 입항화물은 입항시점, 출항화물은 출항시점을 각각 그 적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공사설립이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설립이전에 무료장치기간이 도래하여 화물체화료가 발생하고 있는 화물은 공사가 일괄 부과·징수 후 공사설립일 이전까지의 화물체화료는 국가에 납부한다.

부칙 <2005.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2007년 4월 5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8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8.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4조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선박에 에 대해서는 제5조 ⑥ 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008.05.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8년 6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년 7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1월 1일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02.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 6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0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 10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4.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01.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0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부터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을 적용한다.

부칙 <2016.0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7.0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8.0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9.0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0.0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0.07.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7월 2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0.09.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2호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시행일 00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인천항에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신규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과 풀컨테이너선”에 적용하는 사용료 종류별 감면율은 2020년 12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며, 2021년 2월 28일 입항선박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부터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해제일과 2021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2021.0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부터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1.0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해제일과 2022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2022.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510호, 2022. 0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523호, 2023. 0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 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발생일과 2023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539호, 2023. 08. 08.>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중항로 선사의 선박료, 한중 여객항로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은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감염 경보 해제일이 여객운송 재개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중국 전체 항만(천진, 단둥 항로 제외) 여객운송 재개일로부터 1개월 후 까지 적용한다.

③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 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발생일과 2023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560호, 2024. 02. 20.>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한중항로 선사의 선박료, 한중 여객항로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은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감염 경보 해제일이 여객운송 재개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중국 전체 항만(천진, 단둥, 대련 항로 제외) 여객운송 재개일로부터 1개월 후 까지 적용한다.

②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 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발생일과 2024년 0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③ “감염 경보 해제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조정(경계→주의)일을 뜻한다.

부칙 <규정 제581호, 2024. 08. 20.>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한중 여객항로 지원대상 선사의 선박료와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및 한중항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규정 제539호 제2항 후단 및 제560호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한중항로 선사의 선박료, 한중항로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종료일은 [별표 2]의 제2호와 같이 한다.

부칙 <규정 제591호, 2025. 01. 2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609호, 2025. 08. 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promulno\$, 7777.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1.29., 2021.1.28., 2022. 1. 25., 2022. 5. 24., 2024.2.20., 2024.8.20>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제4조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원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원 (나) 그 밖의 선박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음 2) 그 밖의 선박 중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자선류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0.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톤·12시간당) ① 외항선 : 2.85원 ② 내항선 : 0.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지장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0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구 분</th> <th>요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반 화물</td> <td rowspan="2">외항</td> <td>입항</td> <td>306</td> </tr> <tr> <td>출항</td> <td>192</td> </tr> <tr> <td>내항</td> <td>85</td> </tr> <tr> <td rowspan="2">기계하역처 리화물</td> <td>외항</td> <td>192</td> </tr> <tr> <td>내항</td> <td>51</td> </tr> <tr> <td rowspan="2">컨테이너 화 물</td> <td>외항</td> <td>4,200</td> </tr> <tr> <td>내항</td> <td>1,161</td> </tr> <tr> <td rowspan="2">송 유 관 이 용 화 물</td> <td>외항</td> <td>111</td> </tr> <tr> <td>내항</td> <td>75</td> </tr> <tr> <td>무 연 탄</td> <td></td> <td>27</td> </tr> </tbody> </table>	구 분			요금	일반 화물	외항	입항	306	출항	192	내항	85	기계하역처 리화물	외항	192	내항	51	컨테이너 화 물	외항	4,200	내항	1,161	송 유 관 이 용 화 물	외항	111	내항	75	무 연 탄		27					
구 분			요금																																		
일반 화물	외항	입항	306																																		
		출항	192																																		
	내항	85																																			
기계하역처 리화물	외항	192																																			
	내항	51																																			
컨테이너 화 물	외항	4,200																																			
	내항	1,161																																			
송 유 관 이 용 화 물	외항	111																																			
	내항	75																																			
무 연 탄		27																																			
(2) 화물체화료	화물의 유통시설 과 판매시설	원/ 10톤1일	0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야 적 장</th> <th colspan="2">창 고</th> </tr> <tr> <th>외항화물</th> <th>내 항 화 물</th> <th>외항화물</th> <th>내 항 화 물</th> </tr> </thead> <tbody> <tr> <td>요금면제 기간</td> <td>입항:5 일 출항:7 일</td> <td>4일</td> <td>입항:5일 출항:7일</td> <td>4일</td> </tr> </tbody> </table> <p>【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p> <table border="1"> <tbody> <tr> <td>1-10일</td> <td>86</td> <td>65</td> <td>187</td> <td>132</td> </tr> <tr> <td>11-20일</td> <td>187</td> <td>132</td> <td>274</td> <td>196</td> </tr> <tr> <td>21-30일</td> <td>244</td> <td>183</td> <td>292</td> <td>210</td> </tr> <tr> <td>31일이상</td> <td>292</td> <td>210</td> <td>339</td> <td>236</td> </tr> </tbody> </table>	구 분	야 적 장		창 고		외항화물	내 항 화 물	외항화물	내 항 화 물	요금면제 기간	입항:5 일 출항:7 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구 분	야 적 장			창 고																																	
	외항화물	내 항 화 물	외항화물	내 항 화 물																																	
요금면제 기간	입항:5 일 출항:7 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 시설	(가) 국제카페리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 (나) 크루즈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	o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주차장시설	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																				
(2) 연안(종합)여객 터미널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다만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 부가세 포함	o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주차장시설	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원/1㎡, 1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요 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창 고 (상옥)</td> <td>외항화물</td> <td>1,326</td> </tr> <tr> <td>내항화물</td> <td>956</td> </tr> <tr> <td rowspan="4">야 적 장</td> <td rowspan="2">포장</td> <td>외항화물</td> <td>588</td> </tr> <tr> <td>내항화물</td> <td>421</td> </tr> <tr> <td rowspan="2">미포장</td> <td>외항화물</td> <td>315</td> </tr> <tr> <td>내항화물</td> <td>231</td> </tr> </tbody> </table>	구 분		요 금	창 고 (상옥)	외항화물	1,326	내항화물	956	야 적 장	포장	외항화물	588	내항화물	421	미포장	외항화물	315	내항화물	231	o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구 분		요 금																				
창 고 (상옥)	외항화물	1,326																				
	내항화물	956																				
야 적 장	포장	외항화물	588																			
		내항화물	421																			
	미포장	외항화물	315																			
		내항화물	231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8)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의경우 항만 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다)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5) 주 차장의 경우 항만공사가 별도 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3) 싸이로 및 냉장 창고 등 특수 창고의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이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이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이프런 전용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 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6) <삭제>	<삭제>	<삭제>	

2.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p>가. 선박료</p> <p>(1) 선박입출항료</p>	<p>(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 등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p> <p>(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p> <p>(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 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p> <p>(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m^3,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p> <p>(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p> <p>(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p> <p>(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p>
<p>(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p>	<p>(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p> <p>(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p> <p>(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 기간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p>(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p> <p>(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p>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p>(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 으로 본다.</p> <p>(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에서 (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p> <p>(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자) 계선료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차)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박지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p>(과)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p> <p>(하)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않는다.</p>
<p>나. 화물료</p> <p>(1) 화물입출항료</p>	<p>(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 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같은 선박에 다시 싣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p> <p>(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p> <p>(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p> <p>(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m³ 미만은 1m³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 10바렐 미만은 10바렐로 본다.</p> <p>(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p> <p>(사) 삭 제</p> <p>(아)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 된 것으로 본다.</p>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p>(자)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402 403 1388 761"> <thead> <tr> <th data-bbox="408 412 651 443">구 분</th> <th data-bbox="657 412 1382 443">환 산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8 452 651 560">중 량</td> <td data-bbox="657 452 1382 560"> 1,000kg = 2,204.6파운드 = 1톤 1Short Ton = 907kg = 2,000파운드 = 0.907톤 1Long Ton = 1,016kg = 2,240파운드 = 1.016톤 </td> </tr> <tr> <td data-bbox="408 568 651 640">용 적</td> <td data-bbox="657 568 1382 640"> 1m³ = 0.883톤 = 35.305CUFT = 423.654B/F ('99.12.30) </td> </tr> <tr> <td data-bbox="408 649 651 757">유 류</td> <td data-bbox="657 649 1382 757"> 1 L = 0.2642Gallon 1Gallon = 3.7854 L 1Barrel(42Gallon) = 158.9873 L </td> </tr> </tbody> </table>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kg = 2,204.6파운드 = 1톤 1Short Ton = 907kg = 2,000파운드 = 0.907톤 1Long Ton = 1,016kg = 2,240파운드 = 1.016톤	용 적	1m ³ = 0.883톤 = 35.305CUFT = 423.654B/F ('99.12.30)	유 류	1 L = 0.2642Gallon 1Gallon = 3.7854 L 1Barrel(42Gallon) = 158.9873 L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kg = 2,204.6파운드 = 1톤 1Short Ton = 907kg = 2,000파운드 = 0.907톤 1Long Ton = 1,016kg = 2,240파운드 = 1.016톤								
용 적	1m ³ = 0.883톤 = 35.305CUFT = 423.654B/F ('99.12.30)								
유 류	1 L = 0.2642Gallon 1Gallon = 3.7854 L 1Barrel(42Gallon) = 158.9873 L								
(2) 화물체화료	<p>(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 								
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p>(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및 에이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p> <p>(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p> <p>(다) 동해목호항(대통령령 제24638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목호항에 한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육상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동해목호항 비산방지시설에 반출입되는 화물중 무연탄은 창고 내항화물 요금을 적용한다.</p> <p>(라) 법 제9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p> <p>(마) 수역 점용 면적 산정기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적용한다.</p>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라. 기타	<p>(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p> <p>(나)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란 항만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장소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간 수송은 제외한다.</p> <p>(다)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p> <p>(라)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나 선박수리에 투입된 인원 및 장비를 하선하기 위하여 다시 입항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p> <p>(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p> <p>(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p> <p>(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사장이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인천항 항만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5조 관련)

<개정 2020.09.24., 2020. 12. 18., 2021.1.28., 2021.04.27., 2021.07.20., 2022. 01. 25., 2022.08.30., 2024.02.20., 2024.08.20., 2025.01.21., 2025.08.19.>

1.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출항료	100%	(1) 군함 (2) 관공선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 (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내항선 (5)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6) 통과선박 (7)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8) 화물 양하(揚荷: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화물을 배에 실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횃수에 상관 없이 감면한다) (9)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11) 경인항을 입출항 하고자 인천항을 통과하는 선박(인천항에 한함)
	100% 이내	(1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50%	<p>(13)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p> <p>(14)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p> <p>(15)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p> <p>(16)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풀컨테이너선</p> <p>*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p> <p>* 항로표지료는 제외</p>
	40%	<p>(17)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p>
	30%	<p>(18)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전용외항선(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 및 동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는 40%를 적용한다)</p> <p>* 단, 인천항의 경우 감면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 방안을 따른다.</p> <p>(19)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p> <p>(20)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p> <p>(21)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p> <p>(22)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평택당진항·군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 여객선</p>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25%	(23)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15%	(24)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외항선(총톤수 3천톤 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제외.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 및 동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5%를 적용한다) * 단, 인천항의 경우 감면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 방안을 따른다. (25)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군함 (2) 관공선 (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통과선박 (5)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6) 연안어선 (7) 5톤 미만의 소형선 (8)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9) 국가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10)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11)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12) 선박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1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정박료에 한정한다)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15)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16)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이내	(17)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70%	(18)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50%	(19)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20)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1)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폴컨테이너선 * 접안료에 한하여 감면 *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
	40%	(22)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0%	(23)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4)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5)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26)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7)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평택당진항·군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 카페리 여객선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25%	(28)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20%	(29)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 [단,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한 선박(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은 제외한다)에 한하며, 감면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5%	(30)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	(31)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 입출항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용화물 (2) 선용품 (3) 여객의 수하물 (4)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5)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6)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7)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8)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9)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 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11) 2026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12)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5)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6)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20%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실증 횟수와 관계 없이 해당 항만시설에 대해 1년에 1회만 감면하며 감면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다.)
	10%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정한다)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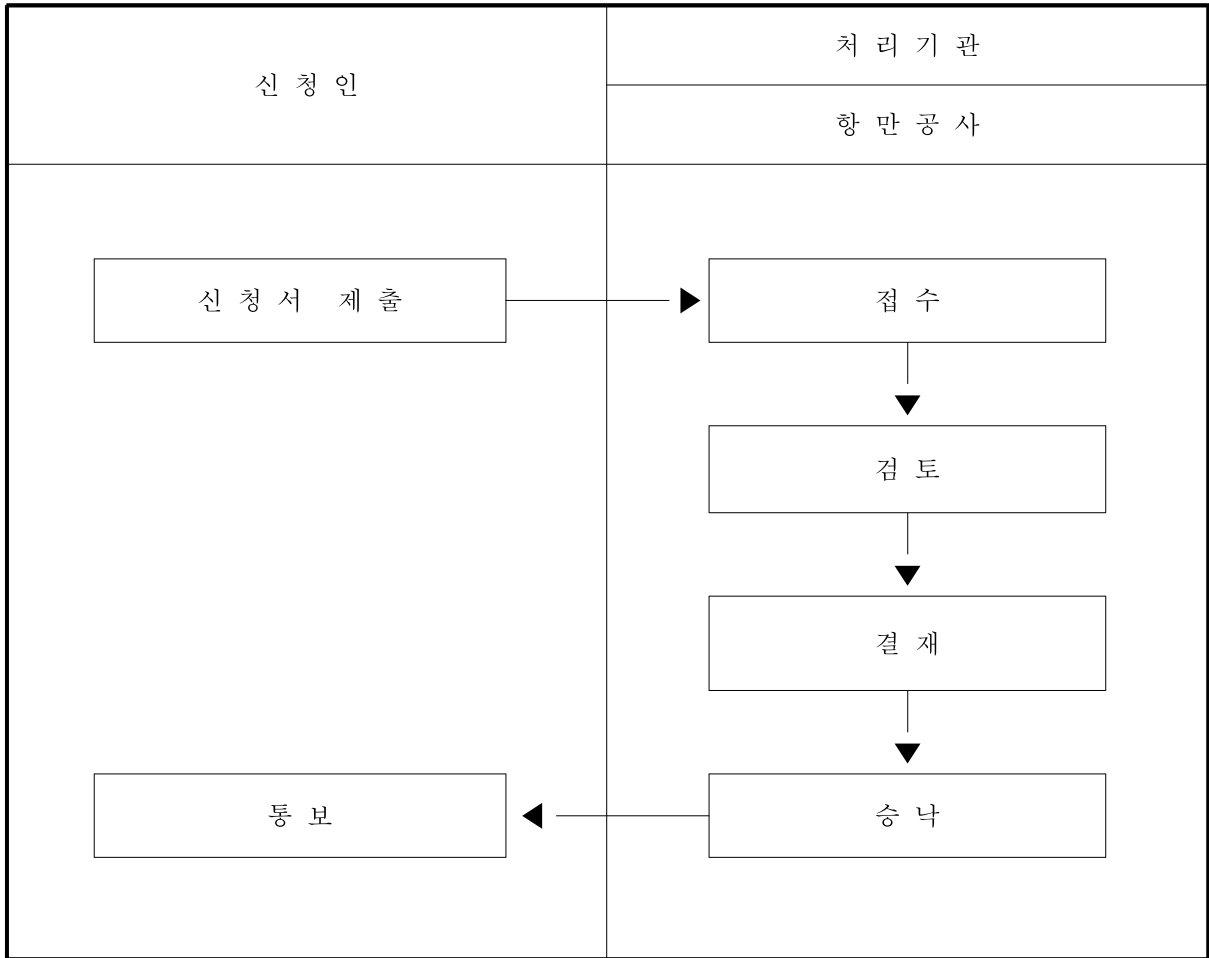
2. <삭제>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를 적으십시오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 반 <input type="checkbox"/> 전 용 <input type="checkbox"/> 계 속 항만시설 사용신청(승낙)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업체코드	□□-□-□□□□ 업체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선박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선 박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 비	m	예 상 흘 수	□□.□m		
항만시설	사용구분	<input type="checkbox"/> 1. 최초 2. 연장 <input type="checkbox"/> 3. 변경 4. 취소			작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1. 입항 2. 이선	
	시설코드	[][]-[][] 시설명			허 가 번 호			
	면 적	m ²	위 치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01. 화물을 신고 내림 02. 화물을 내림 03. 화물을 실음 04. 수리 05. 해난 06. 급유 07. 접안대기 08. 화물대기 09. 상시대기 10. 출항대기 11. 해상하역 12. 계선 13. 수입화물 장치 14. 수출화물 장치 99. 기타						
	사용 명세							
	내릴 화물 종류, 톤	1. □□ □□□,□□□mt 2. □□ □□□,□□□mt 3. □□ □□□,□□□mt						
	신는 화물 종류, 톤	1. □□ □□□,□□□mt 2. □□ □□□,□□□mt 3. □□ □□□,□□□mt						
	장치화물	1. □□ □□□,□□□mt □□□□□개 2. □□ □□□,□□□mt □□□□□개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조건								
사용료	면제	사유	<input type="checkbox"/> 01. 군항 02. 관유선 03. 조선 선박 수리 04. 해난 05. 검역 정박, 06. 낙도보조항로 07. 수산업협동조합 소유 선박 08. 국고 귀속, 압수, 폐기 화물 09. 갑문사정 99. 기타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산출 명세							
	일부 면제	<input type="checkbox"/> 1. 유무 <input type="checkbox"/> 2. 무	면 제 사 유					
사용료	징 수 의 퇴 일		년 월 일	납부기일	년 월 일			
비 고								
<input type="checkbox"/>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항만공사 사장 귀하				<input type="checkbox"/>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항만공사 사장 (인)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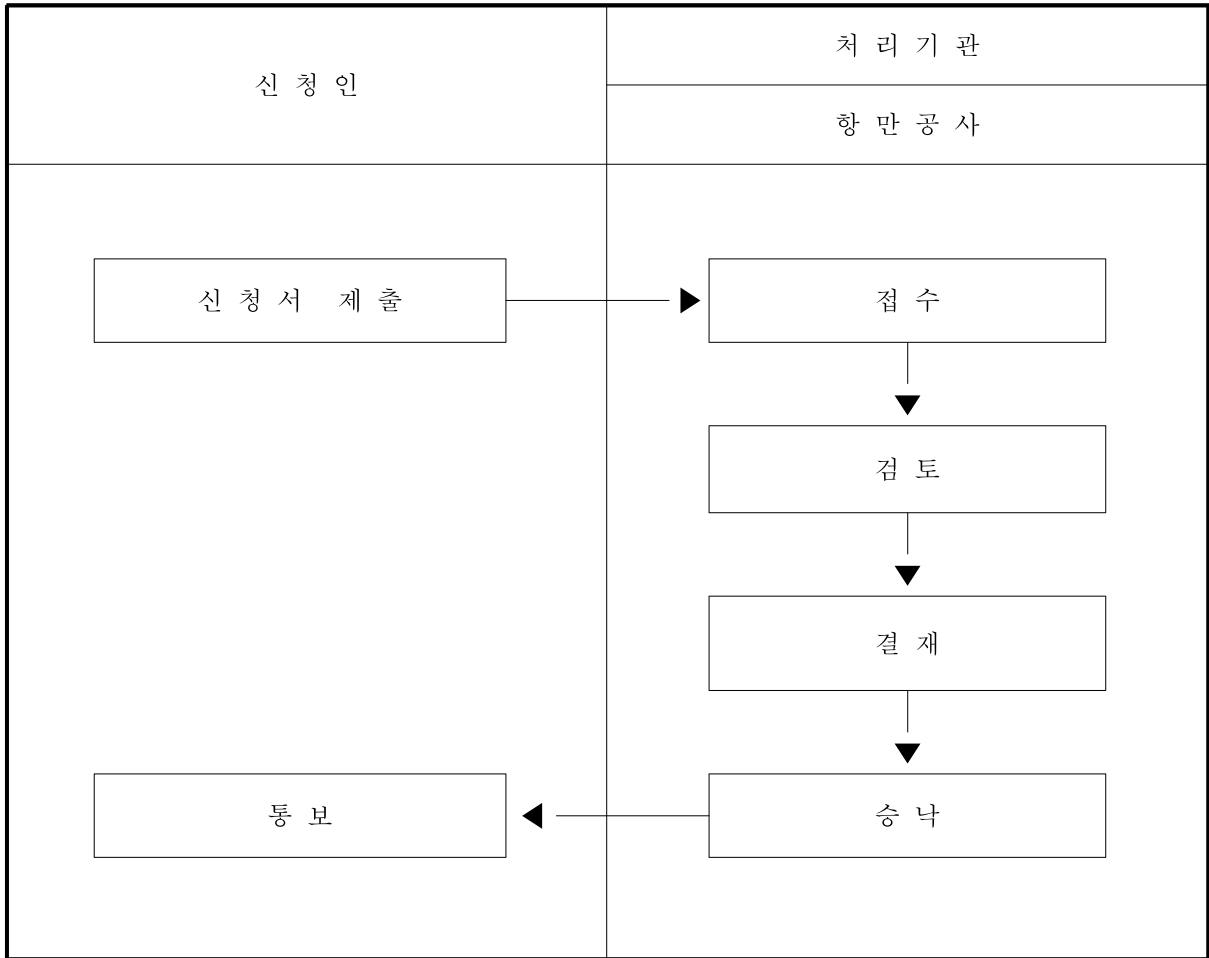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를 적으십시오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전용 <input type="checkbox"/> 계 속 항만시설 사용신청(승낙)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업체코드	□□-□-□□□□ 업체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선박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선 박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비	m	예 상 흘 수	□□.□m	
항만시설	사용구분	<input type="checkbox"/> 1. 최초 2. 연장 <input type="checkbox"/> 3. 변경 4. 취소			작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1. 입항 2. 이선
	시설코드	□□□-□□ 시설명			허 가 번 호		
	면 적	m ²	위 치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01. 화물을 싣고 내림 02. 화물을 내림 03. 화물을 실음 04. 수리 05. 해난 06. 급유 07. 접안대기 08. 화물대기 09. 상시대기 10. 출항대기 11. 해상하역 12. 계선 13. 수입화물 장치 14. 수출화물 장치 99. 기타					
	사용 명세						
	내릴 화물 종류, 톤	1. □□ □□□,□□□mt 2. □□ □□□,□□□mt 3. □□ □□□,□□□mt					
	실는 화물 종류, 톤	1. □□ □□□,□□□mt 2. □□ □□□,□□□mt 3. □□ □□□,□□□mt					
	장치화물	1. □□ □□□,□□□mt □□□□□개 2. □□ □□□,□□□mt □□□□□개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조건							
사용료	면제	사유	<input type="checkbox"/> 01. 군항 02. 관유선 03. 조선 선박 수리 04. 해난 05. 검역 정박, 06. 낙도보조항로 07. 수산업협동조합 소유 선박 08. 국고 귀속, 압수, 폐기 화물 09. 갑문사정 99. 기타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산출 명세						
	일부 면제	<input type="checkbox"/> 1. 유 <input type="checkbox"/> 2. 무	면 제 사유				
사용료	징 수 의 퇴 일		년 월 일	납부기일	년 월 일		
비 고							
<input type="checkbox"/>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항만공사 사장 귀하				<input type="checkbox"/>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항만공사 사장 (인)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작성요령]

○ 화물반입인 경우 같은 적하항에 대하여 문서별로 제출하고, 화물반출인 경우 같은 양하항에 대하여 문서별로 제출합니다. (제2쪽)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 적하목록관리번호(MRN)	○ 선사(대리점)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 제출 일련번호 - "연도(N2) + 선사부호(A4) + 일련번호(AN4) + CHECK DIGIT(N1)"로 구성합니다.	05HDMUA0115
2. 호출부호 및 선명	○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최대 9자리 이내로 기재합니다. ○ 선박의 고유명칭을 기재합니다.	호출부호 : A1CBE 선박명 : HONGKONG EXPRESS
3. 연도-입항횟수	○ 선박의 당해 입항연도 및 당해 연도 입항횟수를 기재합니다.	2005-013
4. 항차	○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항차번호를 기재합니다.	001W
5. 화물구분	○ 화물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 - 수입(I), 수출(E), 환적(R), 통과(T)	
6. 선박국적	○ 선박국적증서상의 선박국적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한국국적의 선박 : KR
7. 선박대리점명	○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KM-S-1234
8. 적하항	○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합니다.	적하항이 중국상해항인 경우 : CNSHA
9. 양하항	○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합니다.	양하항이 부산항인 경우 : KRPUS
10. 최종목적항	○ 선박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인도할 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합니다.	최종목적항이 함부르크일 경우 : DEHAM
11. 선박회사명	○ 관세청에 등록된 선사부호(4자리)를 기재합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 HJCU
12. 제출일시	○ 반출일 경우에만 제출일시를 YYYY/MM/DD 형태로 기재합니다.	2005/12/10
13. MSN	○ 반입일 경우에만 선사에서 부여한 Master B/L 일련번호; MSN(Manifest Sequence Number)를 기재합니다.	일련번호가 1번일 경우 : 0001

14. B/L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B/L)의 발행유형을 코드로 기재합니다. - S(Simple) : 선사가 직접 화주에게 B/L을 발행한 경우 - C(Consol) : 선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한 경우 - E(Empty) : 공 컨테이너인 경우 	
15. 선하증권번호(B/L)	○ 선사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Master B/L 번호)	HDMU0012315656
16. S)송하인 C)수하인 N)통지인	○ B/L상 물품의 송하인/수하인/통지인에 대한 각각의 인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SAMUOUNG EXPRESS CO. 371-20, SINSOO-DONG MAPO-KU, SEOUL, KOREA (02)542-0870
17.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규격 봉인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상 컨테이너번호/규격/봉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입화물의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 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합니다.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를 기재합니다. 	
18.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별 품명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합니다(규격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품명을 기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를 기재합니다. 	SPEAKERS(ELECTRO-VOICE BRAND) SPEAKERS ETC
19. 품목코드	○ 품명에 해당하는 HS코드 6자리를 기재합니다.	300123

20. 포장단위	○ 관세청 통계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2자리)	BARREL일 경우 : BA
----------	----------------------------	-----------------

21. 1) 총중량 2) 총용적	○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및 용적합계를 기재합니다. - 중량단위 : KGM, 용적단위 : CBM(Measurement ton) ·1CBM = 1BARREL/6.2898	
22. 용적톤 단위	○ 용적톤 단위코드는 6Q8(Measurement ton) 또는 BLL(Barrel)로 기재합니다.	
23. 반출입 장소	○ 각 화물이 양적하되는 해양수산부 지정 부두코드(5자리)를 기재합니다.	부산신선대부두 1번선석의 경우 : MBS01
24. 특수화물코드	○ 위험물인 경우 IMDG 위험물코드를 기재합니다.	1.2
25. 하역방법코드	○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하역방법 코드를 기재합니다. - "1"=일반하역, "2"=기계하역, "3"=송유관하역, "4"=무연탄 하역	
26. 하역회사	○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KM-S-0123
27. 국내화주코드/복합운송 주선인(사업자/주민등록번호)	○ 화물에 대한 국내화주 또는 복합운송주선인에 대한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되, 사업자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23-81-12345
28. 장치예정장소	○ 관세청이 지정한 장치장코드(9자리)를 기재합니다.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 : 03012068
29. 화물속성	○ 국내 무역항간 외항선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입화물(최초입항지)의 경우에는 "1"을 기재합니다. ○ 수출화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무역항에 일시 양륙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2"를 기재합니다.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4>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기호를 적으십시오

구분		항만시설 사용신고서(신고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체코드	-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선박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		-		
	선박명		항차				
	국적		총톤수				
화물	입항·출항일	입항일 출항일					
	반입·반출현황	별첨 양식(화물 반입·반출 현황, 컨테이너 반입·반출 현황)					
시설사용료(화물)	구분	<input type="checkbox"/> 1. 외항입항 2. 외항출항 <input type="checkbox"/> 3. 내항입항 4. 내항출항			납기일	년 월 일	
	시설종류				사용장소		
	하역구분	운임톤수/개수	기본료	할인율	사용료	할인코드	비고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역 구분)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일반하역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기계하역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송유관하역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무연탄
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공컨테이너 20FT 초과	
7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할인코드) 1. 30% 2. 50% 9. 100%	
계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항만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10px;"> 화물 [□반입] 현황 </div>																	
376		()항만공사 사장 귀하												1. 적하목록관리번호(MRN)			
2. 호출부호 및 선박명			3. 연도-입항횟수		4. 항차	5. 화물구분		6. 선박국적		7. 선박대리점명							
8. 적하항			9. 양하항			10. 최종 목적항			11. 선박회사명					12. 제출일시			
13. MSN	14. B/L Type	15. 선하증권번호(B/L)	16. S)송하인 C)수하인 N)통지처	17.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규격 봉인번호	18. 품명	19. 품목 코드	20. 포장 단위	21. 가. 총중량 나. 총용적	22. 용적 단위	23. 반입·반 출 장소	24. 특수 화물 코드	25. 하역 방법 코드	26. 하역회사	27. 국내화주코 드/복합운 송주선인(사 업자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	28. 장치 예정 장소(장 치장 부호)	29. 화물 속성	
소 계			컨테이너 개수					중량톤									
								용적톤									

[작성요령]

○ 화물반입인 경우 같은 적하항에 대하여 문서별로 제출하고, 화물반출인 경우 같은 양하항에 대하여 문서별로 제출합니다. (제2쪽)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 적하목록관리번호(MRN)	○ 선사(대리점)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 제출 일련번호 - "연도(N2) + 선사부호(A4) + 일련번호(AN4) + CHECK DIGIT(N1)"로 구성합니다.	05HDMUA0115
2. 호출부호 및 선박명	○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최대 9자리 이내로 적습니다. ○ 선박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호출부호: A1CBE 선박명: HONGKONG EXPRESS
3. 연도-입항횟수	○ 선박의 해당 입항연도 및 해당 연도 입항횟수를 적습니다.	2005-013
4. 항차	○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항차번호를 적습니다.	001W
5. 화물구분	○ 화물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수입(I), 수출(E), 환적(R), 통과(T)	
6. 선박국적	○ 선박국적증서상의 선박국적 - 해당 국가의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 : KR
7. 선박대리점명	○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적습니다.	KM-S-1234
8. 적하항	○ 선박에 화물을 실은 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적습니다.	적하항이 중국 상해항인 경우: CNSHA
9. 양하항	○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적습니다.	양하항이 부산항인 경우: KRBUS
10. 최종 목적항	○ 선박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인도할 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적습니다.	최종 목적항이 함부르크인 경우: DEHAM
11. 선박회사명	○ 관세청에 등록된 선사부호(4자리)를 적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 HJCU
12. 제출일시	○ 반출인 경우에만 제출일시를 YYYY/MM/DD 형태로 적습니다.	2005/12/10
13. MSN	○ 반입인 경우에만 선사에서 부여한 Master B/L 일련번호; MSN(Manifest Sequence Number)를 적습니다.	일련번호가 1번인 경우 : 0001

14. B/L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B/L)의 발행유형을 코드로 적습니다. - S(Simple): 선사가 직접 화주에게 B/L을 발행한 경우 - C(Consol): 선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한 경우 - E(Empty): 공 컨테이너인 경우 	
15. 선하증권번호(B/L)	○ 선사 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Master B/L 번호)	HDMU0012315656
16. S)송하인 C)수하인 N)통지처	○ B/L상 물품의 송하인/수하인/통지인에 대한 각각의 인명/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SAMUONG EXPRESS CO. 371-20, SIN SOO-DONG MAPO-GU, SEOUL, KOREA (02)542-0870
17.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규격 봉인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상 컨테이너번호/규격/봉인번호를 적습니다. - 수입화물의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 이내의 해당 컨테이너번호를 적습니다.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 번호를 적고, 벌크화물은 "IN BULK"를 적습니다. 	
18.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별 품명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적은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적습니다(규격은 적지 않습니다). -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품명을 적고, 맨 마지막에 "ETC"를 적습니다. 	SPEAKERS (ELECTRO-VOICE BRAND) SPEAKERS ETC
19. 품목코드	○ 품명에 해당하는 HS코드 6자리를 적습니다.	300123
20. 포장단위	○ 관세청 통계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2자리)	BARREL인 경우: BA

21. 가. 총중량 나. 총용적	○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및 용적 합계를 적습니다. - 중량단위: KGM, 용적단위: CBM(Measurement ton) ·1CBM = 1BARREL/6.2898	
22. 용적톤 단위	○ 용적톤 단위코드는 6Q8(Measurement ton) 또는 BLL(Barrel)로 적습니다.	
23. 반입·반출 장소	○ 각 화물이 양하·적하되는 해양수산부 지정 부두코드(5자리)를 적습니다.	부산신선대부두 1번 선석의 경우 : MBS01
24. 특수화물코드	○ 위험물인 경우 IMDG 위험물코드를 적습니다.	1.2
25. 하역방법코드	○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하역방법코드를 적습니다. - "1"=일반하역, "2"=기계하역, "3"=송유관하역, "4"=무연탄 하역, "5"=컨테이너하역	
26. 하역회사	○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적습니다.	KM-S-0123
27. 국내화주코드/복합운송 주선인(사업자등록번호/주민 등록번호)	○ 화물에 대한 국내화주 또는 복합운송주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되, 사업 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3-81-12345
28. 장치 예정 장소	○ 관세청이 지정한 장치장코드(9자리)를 적습니다.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 03012068
29. 화물 속성	○ 국내 무역항 간 외항선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입화물(최초 입항지)의 경우에는 "1"을 적습니다. ○ 수출화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무역항에 일시 양륙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2"를 적습니다.	